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95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7. 13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구민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
1) 일반직 계: 1,180명 → 1,177명 (감3)

가) 6급 이하: 1,116명 → 1,113명 (집행기관 감3)

2) 별정직 계: 3명 → 6명 (증3)

가) 6급 상당 이하: 2명 → 5명 (집행기관 증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 : 2022. 6. 8. ~ 2022. 6. 28.(20일간)
- 3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(제4조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		의 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77	1,150			27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
6급 이하 계	1,113	1,089			24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6	4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5	3		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						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					
[별표 3]						[별표 3]					
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						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 구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 구	
		본 청	보 건 소	동			본 청	보 건 소	동		
총 계	1,184	1,155			29	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	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80	1,153			27	일반직 계	<u>1,177</u>	<u>1,150</u>			27
3급	1	1				3급	1	1			
4급	8	6	1		1	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	5급	53	32	9	10	2
6급 이하	1,116	1,092			24	6급 이하	<u>1,113</u>	<u>1,089</u>			24
전문경력관	2	2				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3	1			2	별정직 계	<u>6</u>	<u>4</u>			2
5급 상당	1	1				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2	-			2	6급 상당 이하	<u>5</u>	<u>3</u>			2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직렬·직급별 정원 상계조정으로 연간 5천만원 이하의 추가비용 예상
(일반직 6급이하 △3 → 별정직 6급상당이하 +3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과 임수애
연 락 처	2627 - 1012

현행조례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184명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155명
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9명

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99% 이상	1% 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1%이내	30%이내	10%이상	1%이내

2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 이하
비 율	35% 이내	35% 이내	30% 이상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		의 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80	1,153			27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
6급 이하 계	1,116	1,092			24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3	1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2				2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2020.3.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3.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